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18나1114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화타이어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화통상)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합52083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8.

판 결 선 고 2018. 6.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별지1 기재 타이어를 판매, 수출, 수입,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이거나 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별지1 기재 타이어의 완제품 및 반제품, 위 타이어가 게재된 선전광고물을 모두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69,238,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0744202호/2012. 9. 5./2014. 5. 14.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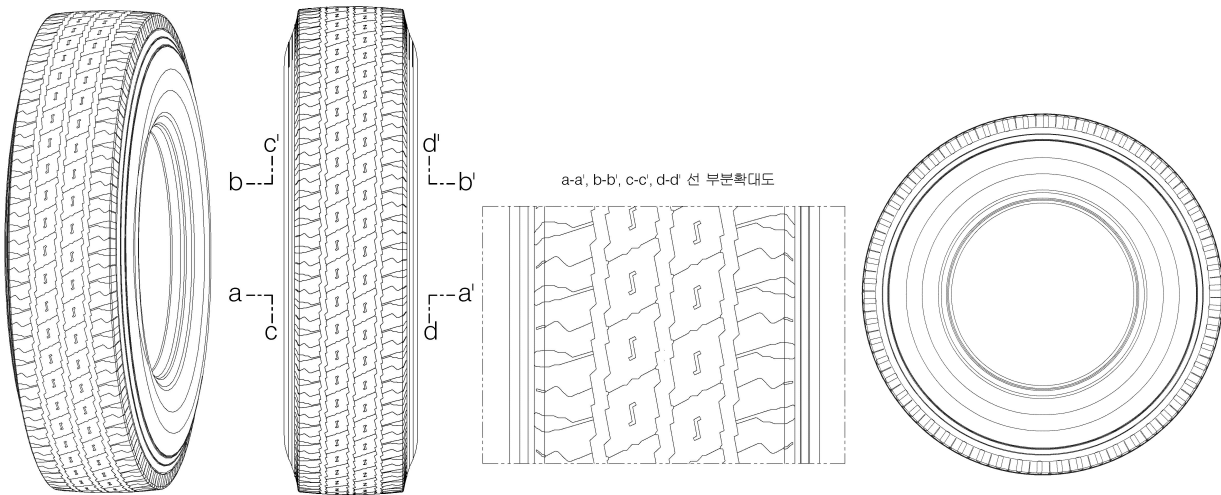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고무재임.
2. 정면도에 도시된 1점쇄선은 참고도 1에 부분확대도를 표시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공지된 자동차용 타이어 형상에 모양이 표현된 본원 "자동차용 타이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주요도면:



[사시도]

[정면도]¹⁾

[참고도 1]

[좌측면도]²⁾

나. 피고 제품

피고는 다음과 같은 형상 및 모양의 별지 1 기재 자동차용 타이어(모델명 'AGR29')를 판매한다.

1) 평면도와 저면도도 이와 동일하다.

2) 우측면도도 이와 동일하다.



다. 선행디자인

별지2 목록 각 항 기재와 같다(이하 해당 순번에 따라 '선행디자인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3, 9, 12, 13호증, 을 제3 내지 22, 25 내지 34, 44, 4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당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조성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제품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선행디자인 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와 모양을 포함하는 경우 그 공지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다면 피고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대비

가) 물품의 동일성 여부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자동차용 타이어'이고, 피고 제품은 '자동차용 타이어'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피고 제품은 동일한 물품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디자인 대비

	정면도	참고도(부분확대도)
이 사건 등록디 자인		
피고 제품		

(1) 공통점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이 인정된다.

- ① 트레드³⁾의 세로 방향으로 꺾은 선 모양의 3줄의 깊은 홈이 서로 평행하게 형성

되어 트레드가 4개의 돌출부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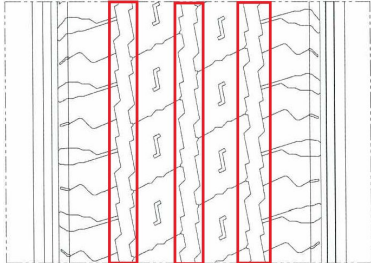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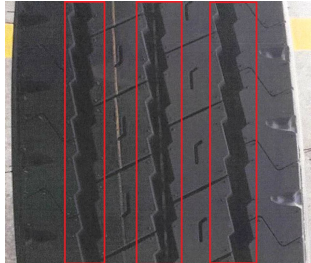
② 트레드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돌출부(이하 '중앙부'라 한다)에는 각각 평행사변형에 유사한 모양(이하 '평행사변형 부분'이라 한다)이 트레드의 세로 방향으로 반복하여 이어진다.

③ 평행사변형 부분의 중앙에 '』' 및 '』'와 같은 꺾인 선형 모양(이하 '선형 모양'이라 한다)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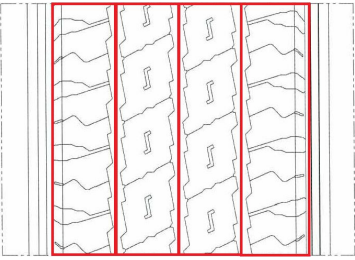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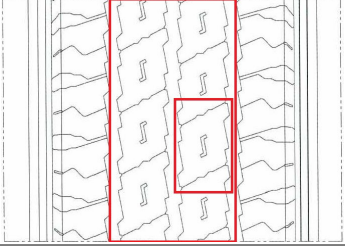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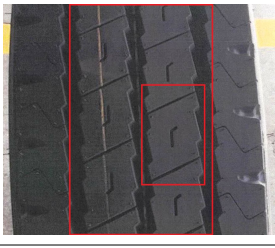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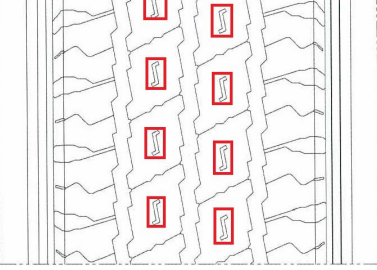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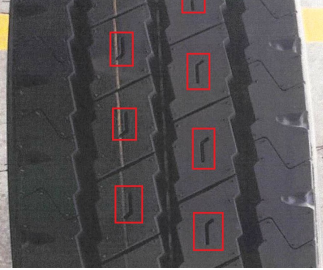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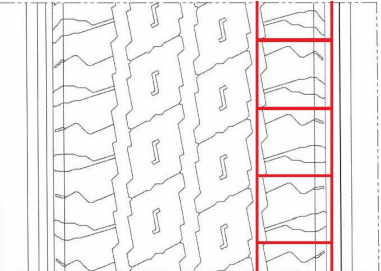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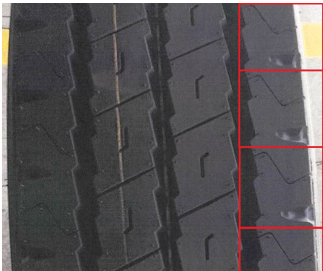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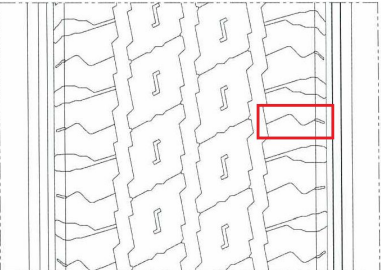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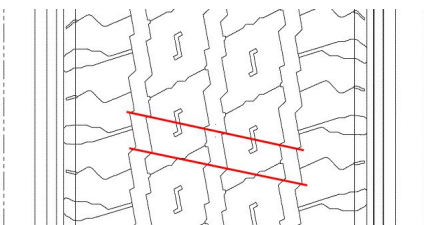

④ 트레드 양측 가장자리 각 돌출부(이하 '가장자리부'라 한다)에는 얇은 가로선과 두꺼운 홈이 평행사변형 부분의 세로 길이와 같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형성된다.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모두 가장자리부의 얇은 가로선(이하 '가장자리부 가로선'이라 한다)이 두 번 꺾인 모양이다.

⑥ 트레드의 세로 방향의 홈에 형성된 꺾은 선이 각각 동일한 길이로 반복하되 옆에 인접한 꺾은 선과 맞물리는 모양으로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좌측 가장자리부부터 중앙부의 평행사변형 부분을 거쳐 우측 가장자리부까지 순차로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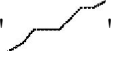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	피고 제품
공통점 ①		




3) 타이어 중 노면과 접촉하는 접지면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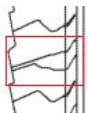

		
공통점 ②		
공통점 ③		
공통점 ④		
공통점 ⑤		
공통점 ⑥		

(2) 차이점

반면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이 인정된다.

㉠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및 와 같이 'W'자 또는 역 'W'자 모양으로 5번 꺾인 것인 반면, 피고 제품은 와 같이 직선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선형 모양이 모두 와 같이 상단과 하단 모두 꺾인 모양인 반면, 피고 제품의 경우에는 중앙부 좌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선형 모양은 와 같이 하단만 꺾인 모양이나, 중앙부 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선형 모양은 와 같이 상단만 꺾인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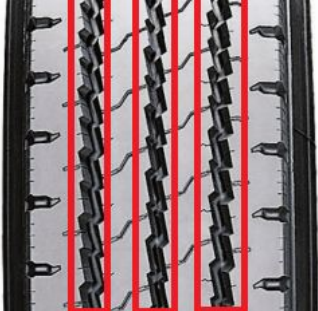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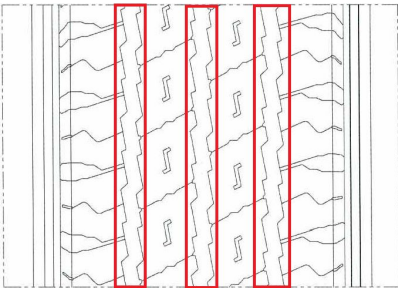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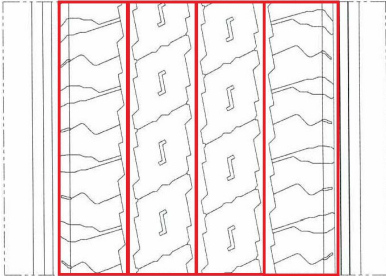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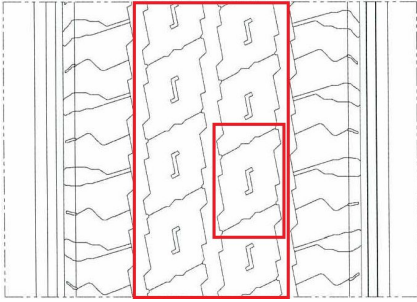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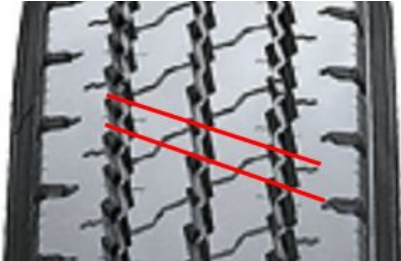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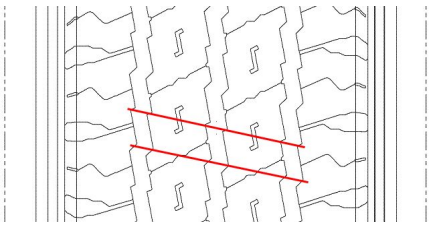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장자리부의 홈이 와 같이 가장자리부의 안쪽 끝에서부터 중간까지는 가늘게 형성되다가 중간부터 바깥쪽 끝으로 가면서 폭이 점점 넓어지지만, 피고 제품은 가장자리부의 홈이 와 같이 가장자리부의 중간에서 시작하여 바깥쪽 끝까지 이어지는 짧은 형태이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된 부분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

갑 제9, 13호증, 을 제3, 4, 11, 13, 14, 25, 26, 47, 5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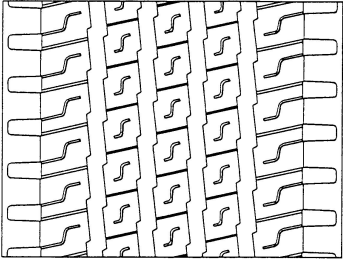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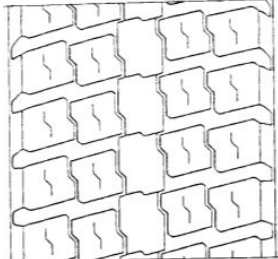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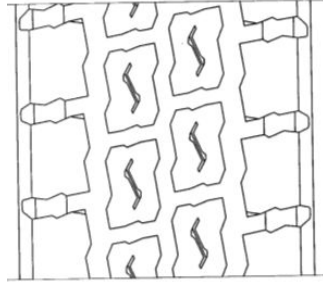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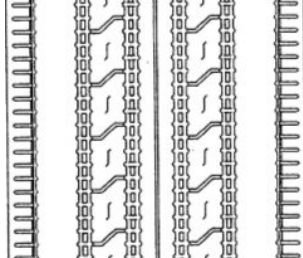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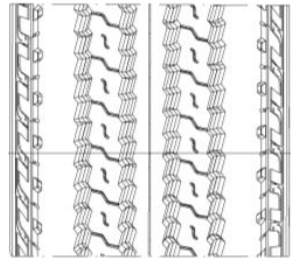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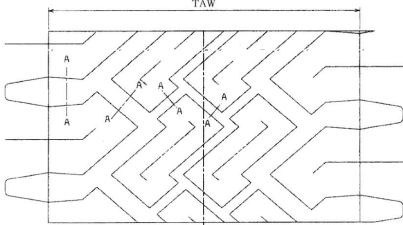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①, ②, ⑥은 모두 아래 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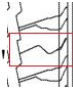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에 공지되었다.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p>공통점 ①</p>	 	 
<p>공통점 ②</p>		
<p>공통점 ⑥</p>		


(2) 또한, 공통점 ③ 및 차이점 ㉔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행사변형

부분 중앙에 '』'와 같이 상단 및 하단이 모두 꺾인 형태의 '선형 모양'을 배치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되었다.


선행디자인 7 (을 제11호증)	선행디자인 9 (을 제13호증)	선행디자인 10 (을 제14호증)
		
선행디자인 19 (을 제25호증)	선행디자인 20 (을 제26호증)	선행디자인 31 (을 제50호증)
		

(3) 공통점 ⑤와 관련하여 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자리부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가장자리부에 얇은 가로선과 홈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 자체는 아래와 같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다.

선행디자인 28의 1(을 제3호증)	선행디자인 28의 2(을 제47호증)	선행디자인 28의 3(을 제4호증)
		

(4) 한편 차이점 ㉠과 관련하여 위 선행디자인들에도 가장자리부의 얇은 가로선이 직선 또는 '

(5) 차이점 ㉡과 관련하여 트레드 가장자리부의 바깥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형성하는 것 자체는 위와 같은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나타나 있다.

(6)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러한 선행디자인들의 대비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은 ㉢ 중앙부 좌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은 '

3)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①, ②, ③, ⑤, ⑥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하여 공지된 부분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정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용 타이어에 다수의 선행디자인들이 존재하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제품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자는 유사하지 아니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공통점 중 ①, ②, ⑥이 선행디자인 1에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공통점들은 양자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통점 ③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선행디자인에 '평행사변형 부분에 선형 모양'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오히려 차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평행사변형 부분에 형성되는 '선형 모양'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점 ③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부 좌우측의 평행사변형 부분이 통일성이 있는 미감을 주지만, 피고 제품은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미감을 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자리부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가장자리부에 얇은 가로선과 홈을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하는 것 자체는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미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오히려 가장자리부의 홈은 타이어의 사용 상태에 따라 정면에서는 물론 측면에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구체적 형상이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차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가장자리부의 홈의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점 ④, 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홈이 가장자리부를 전체적으로 일부 절단한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은 가장자리부의 끝 부분만 파낸 느낌을 주고, 이

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 또한,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은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 이어서 그 구체적 형상이 자동차용 타이어의 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중앙부 좌우측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를 구분하는 가로선의 구체적 모양은 특징적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차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일체감 있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반면, 피고 제품에서는 평행사변형 부분의 상하변이 좌우변과 구분되는 느낌을 준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들은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윤희

판사 김동규

[별지 1]

피고제품

다음과 같은 디자인의 “AEOLUS AGR 29” 자동차용 타이어 제품

[정면도]



끝.

[별지 2]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을 제3호증)

원고의 2008~2009년 트럭 버스용 타이어 가이드에 게재된 타이어 디자인



AH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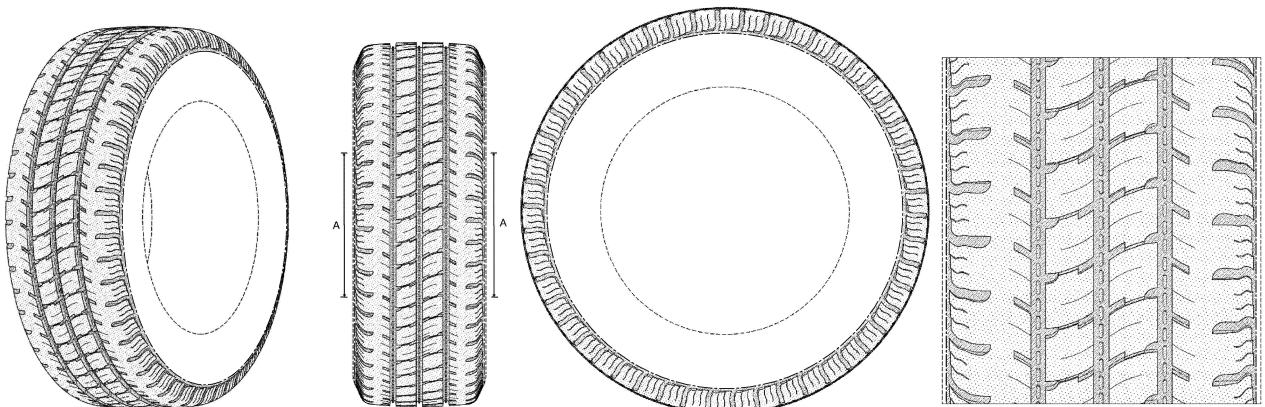
- 카고트럭의 다양한 사용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패턴 디자인
- 신기술, 특수 배합고무 적용으로 내마모 성능 및 연비 향상
- 승차감 및 제동·구동 성능 향상을 위한 컵프 적용

규격	플레이수	표준링폭	최대하중(kgs)		최대공기압(PSI)	
			단륜	복륜	단륜	복륜
750R16	16	6.50	1615	1445	110	110
825R16	18	6.50	1995	1795	125	125
205/75R17.5	12	6.00	1600	1500	100	100
9.5R17.5	16	6.75	1950	1850	120	120
1000R20	16	7.50	3000	2725	120	120
1100R20	16	8.00	3350	3075	120	120
11R22.5	16	8.25	3000	2725	120	120
12R22.5	16	8.25	3350	3075	120	120

2. 선행디자인 2 (을 제6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563988호/2009. 3. 30./2010.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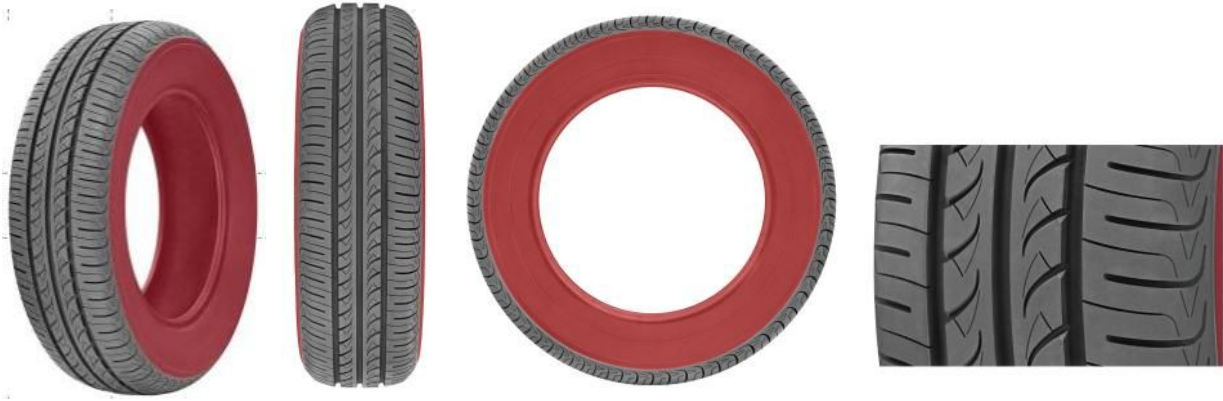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3. 선행디자인 3 (을 제7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33646호/2010. 8. 18./2012. 2. 15.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4. 선행디자인 4 (을 제8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29638호유사1/2010 10. 1./2012.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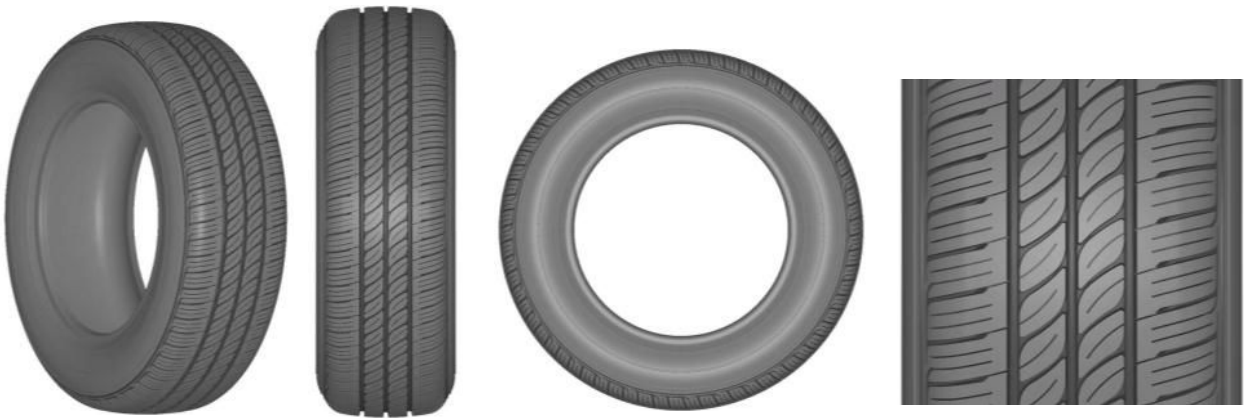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5. 선행디자인 5 (을 제9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24520호/2010. 10. 1./2011. 12. 5.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6. 선행디자인 6 (을 제10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29365호/2010. 10. 1./2012.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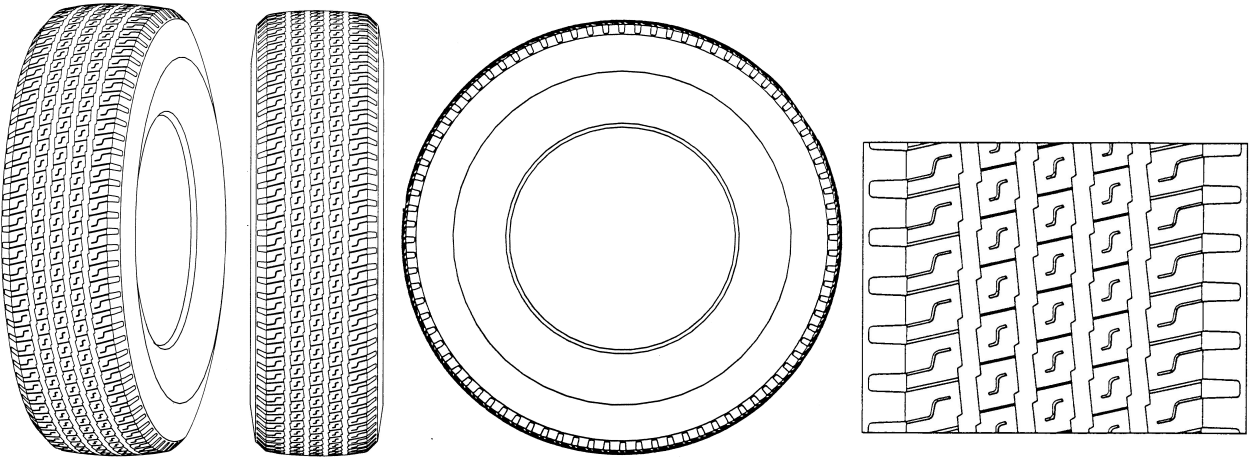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7. 선행디자인 7 (을 제11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291490호/2000. 12. 2./2002.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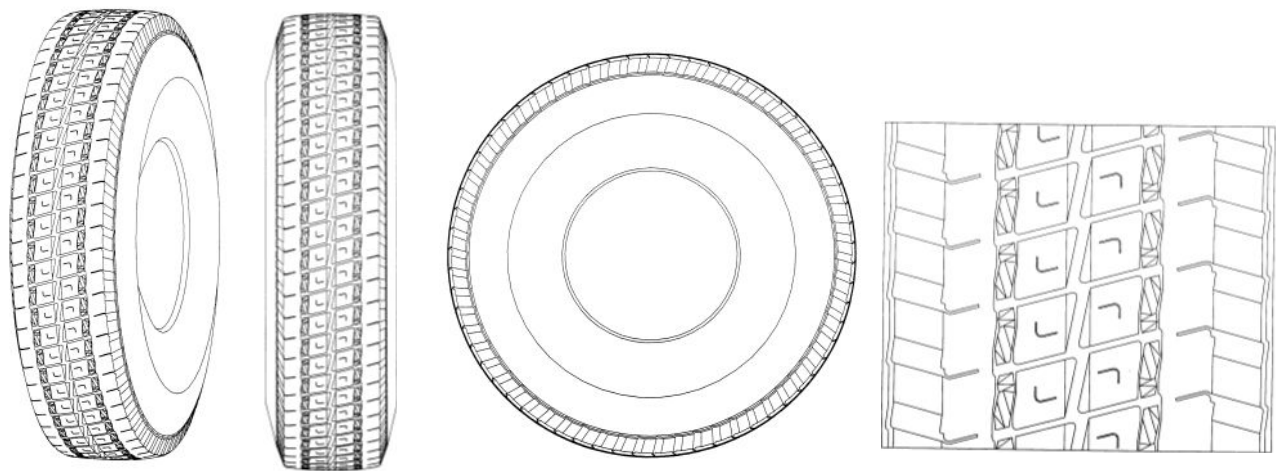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8. 선행디자인 8 (을 제12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48860호/2003. 6. 18./2004.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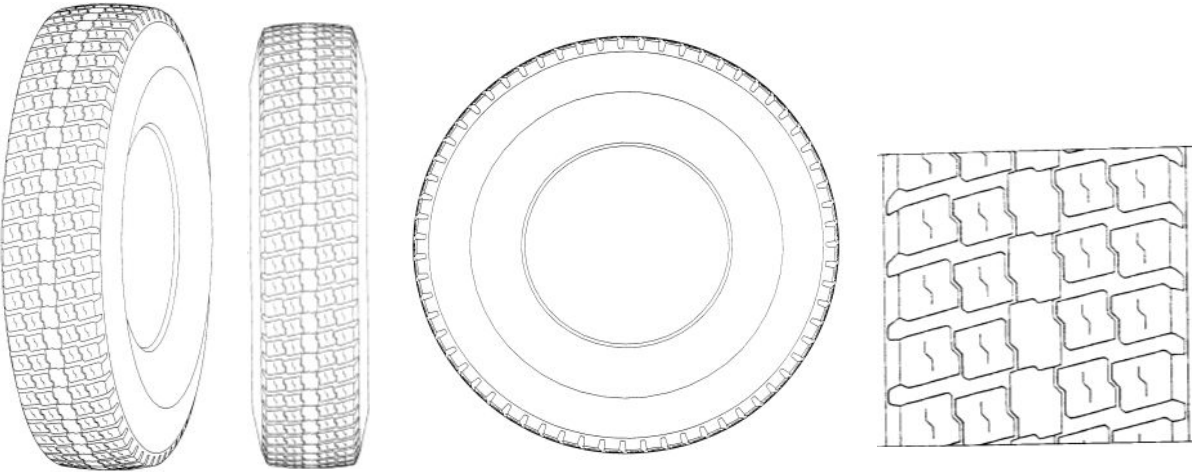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9. 선행디자인 9 (을 제13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48863호/2003. 6. 18./2004.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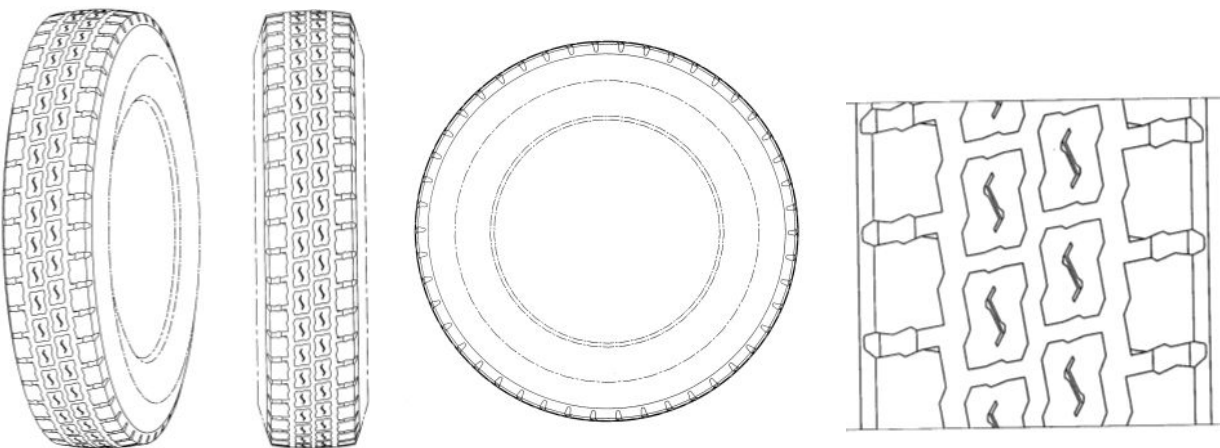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0. 선행디자인 10 (을 제14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77741호/2004. 8. 9./2005.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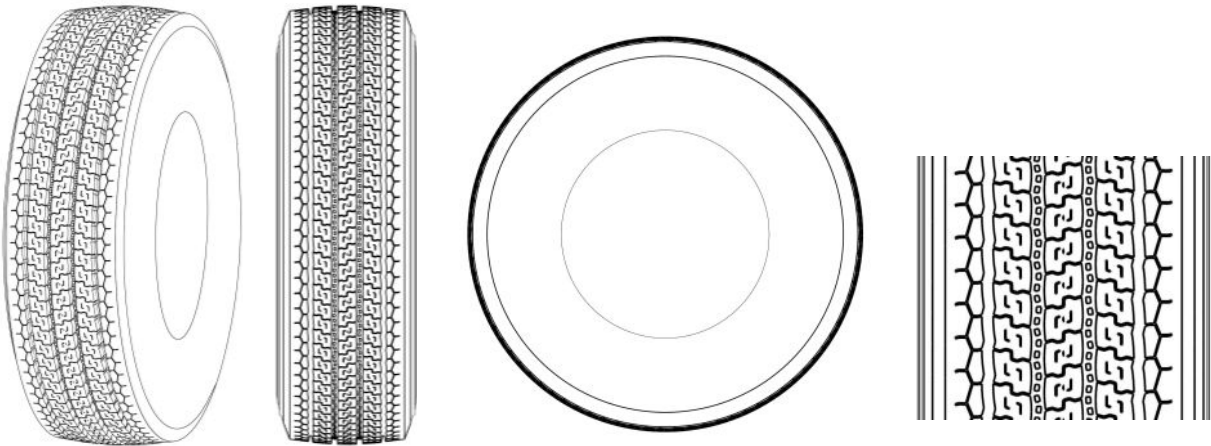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1. 선행디자인 11 (을 제15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524180호/유사1/2010. 3. 24./2011.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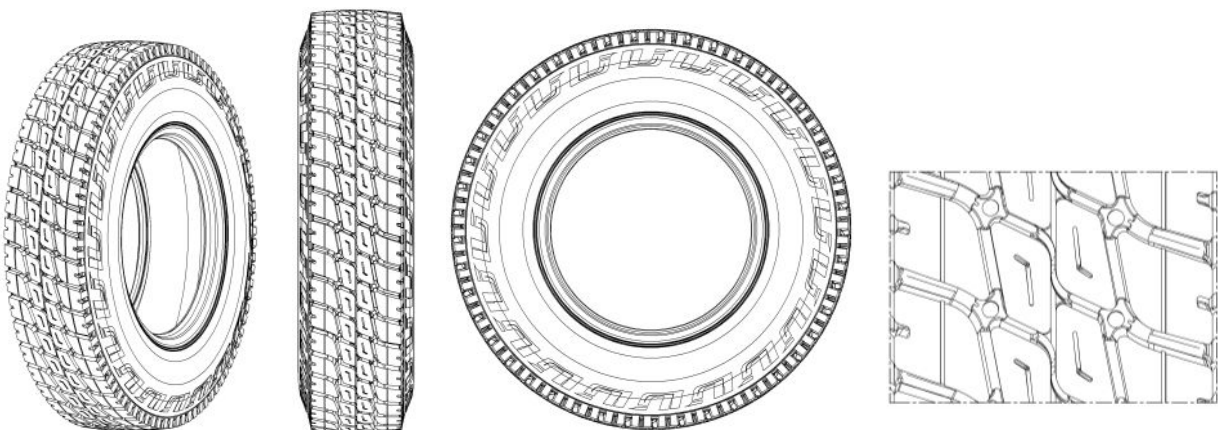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트럭용 타이어



12. 선행디자인 12 (을 제16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21656호/2010. 4. 2./2011.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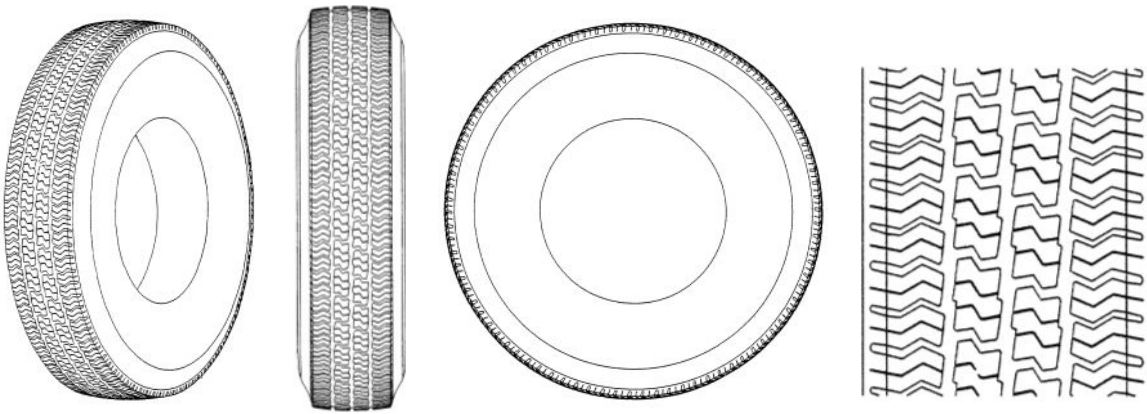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3. 선행디자인 13 (을 제17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259391호/1999. 7. 27./2000.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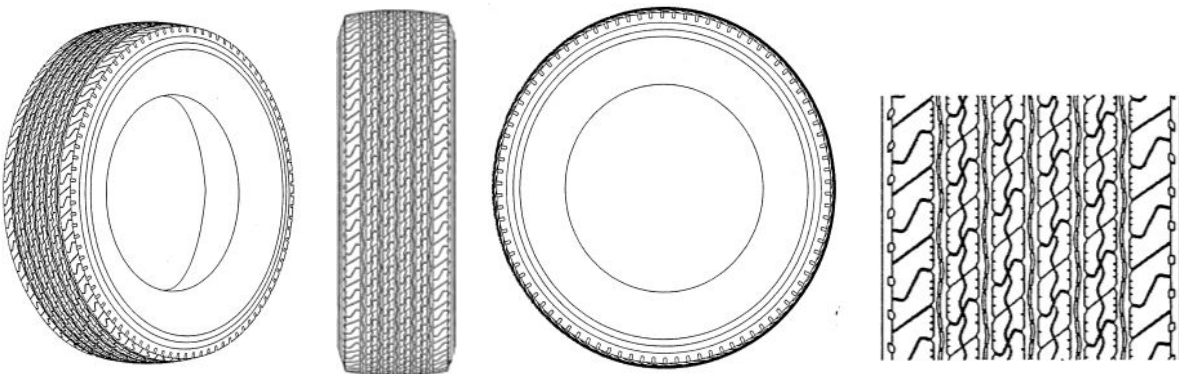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4. 선행디자인 14 (을 제18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4998호/2001. 8. 3./2002. 8. 6.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5. 선행디자인 15 (을 제19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528539호/2008. 4. 18./2009.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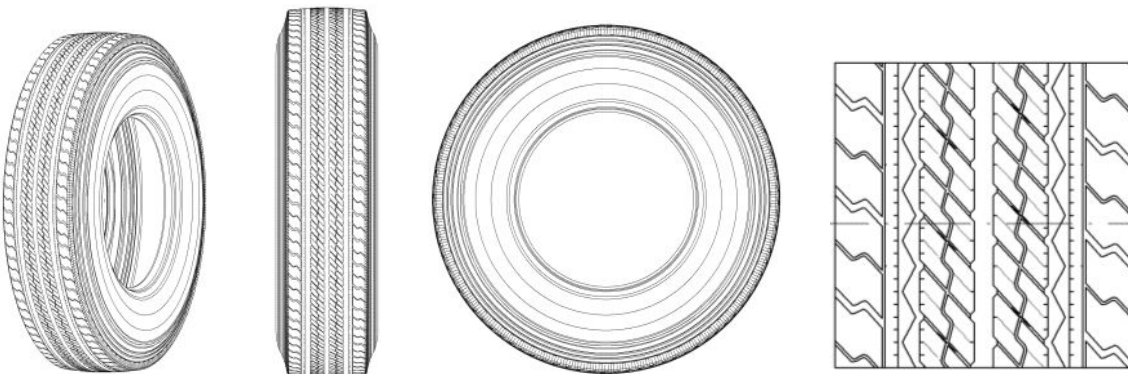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6. 선행디자인 16 (을 제20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09219호/2010. 4. 2./2011.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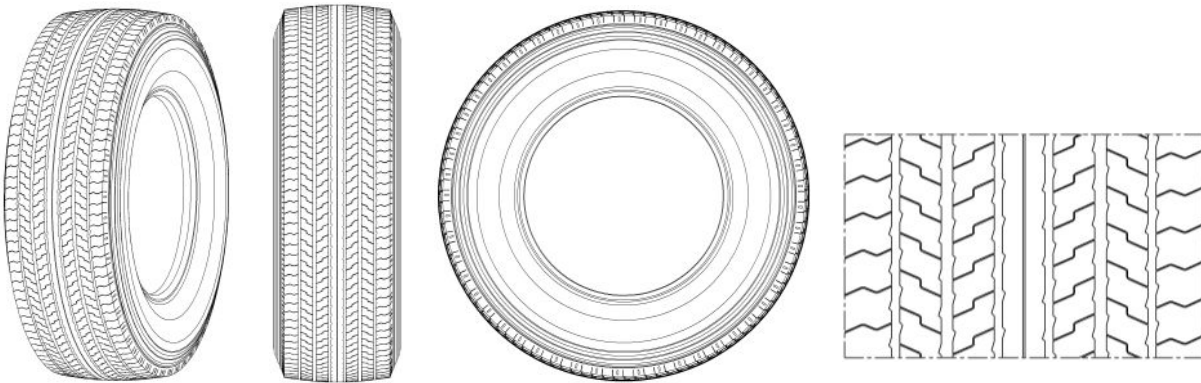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7. 선행디자인 17 (을 제21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21657호/2010. 4. 2./2011.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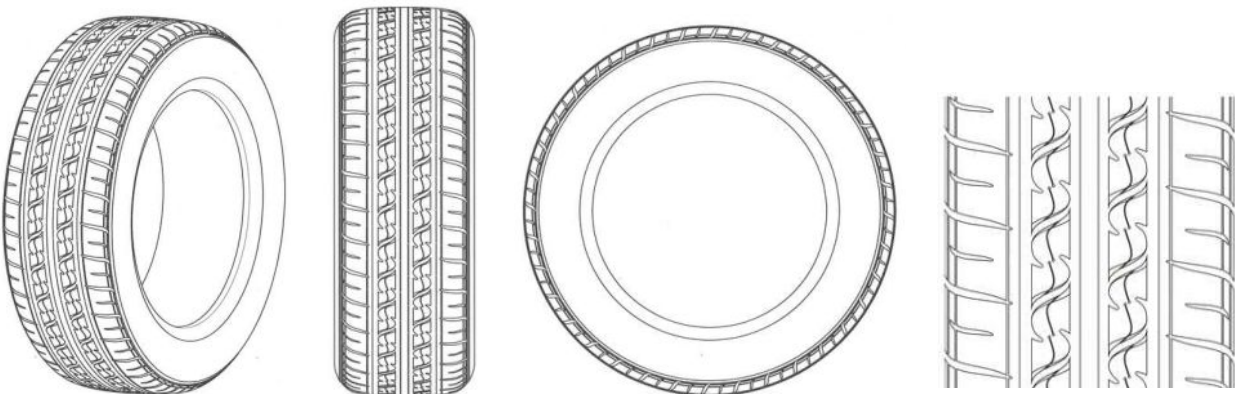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8. 선행디자인 18 (을 제22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483253호/2007. 9. 27./2008.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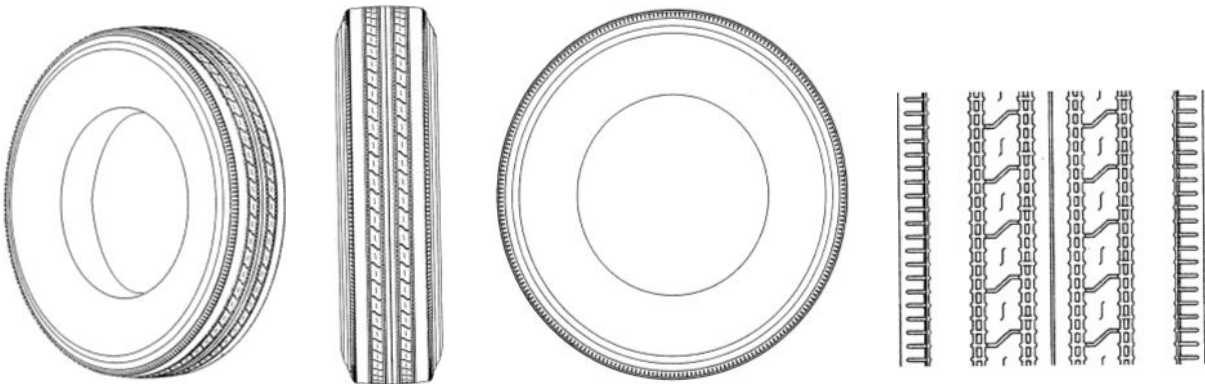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19. 선행디자인 19 (을 제25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5000호/2001. 8. 3./2002.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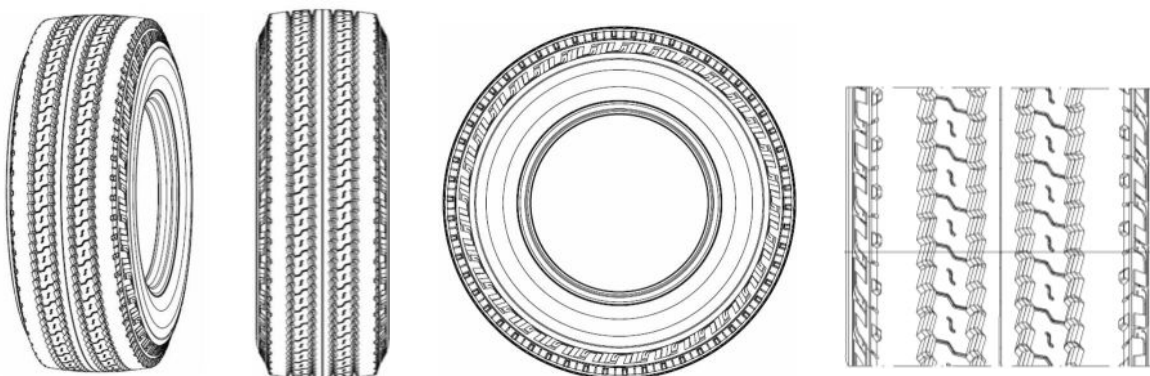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0. 선행디자인 20 (을 제26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592614호/2009. 10. 8./2011.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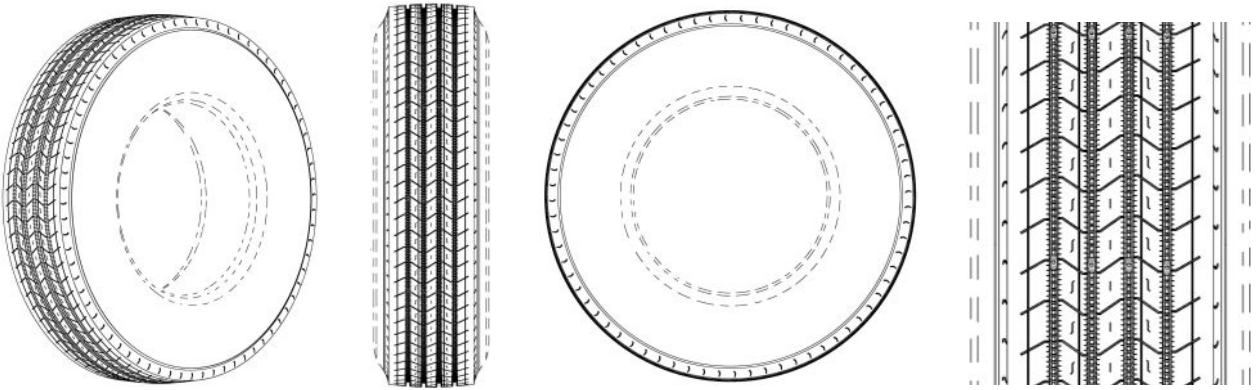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1. 선행디자인 21 (을 제27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646239호/2010. 7. 26./2012. 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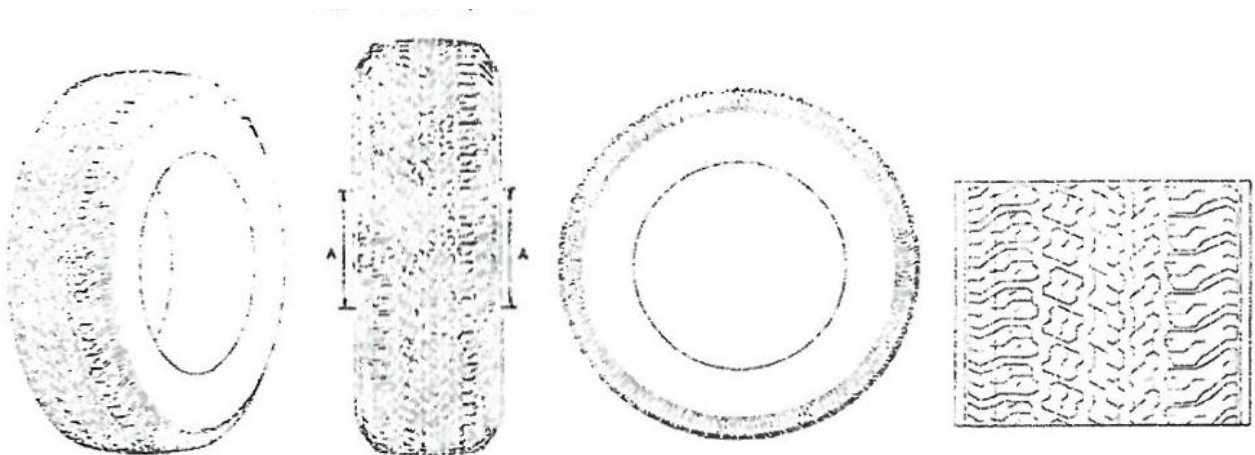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트럭용 타이어



22. 선행디자인 22 (을 제29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186085호/1995. 6. 1./1996. 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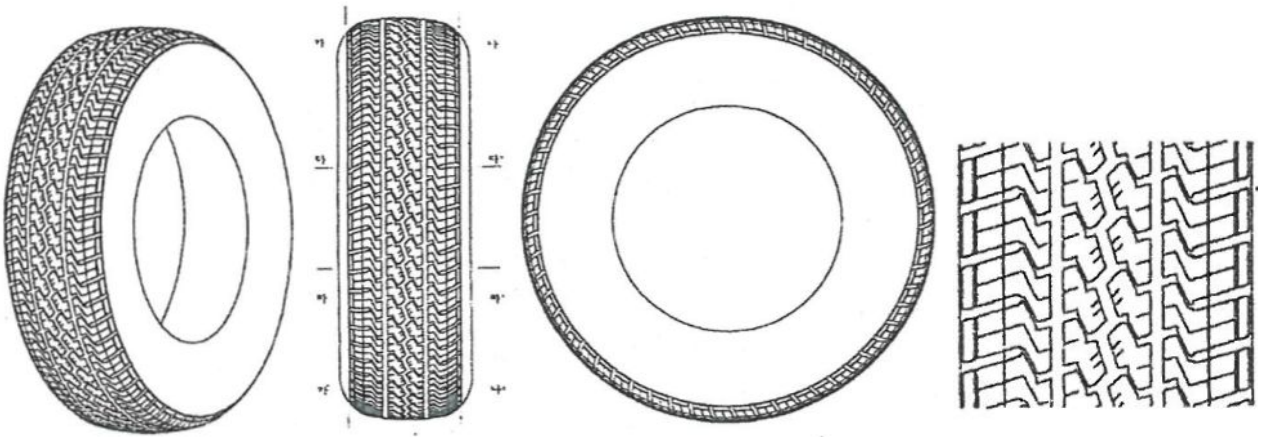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3. 선행디자인 23 (을 제30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205758호/1996. 8. 30./1997. 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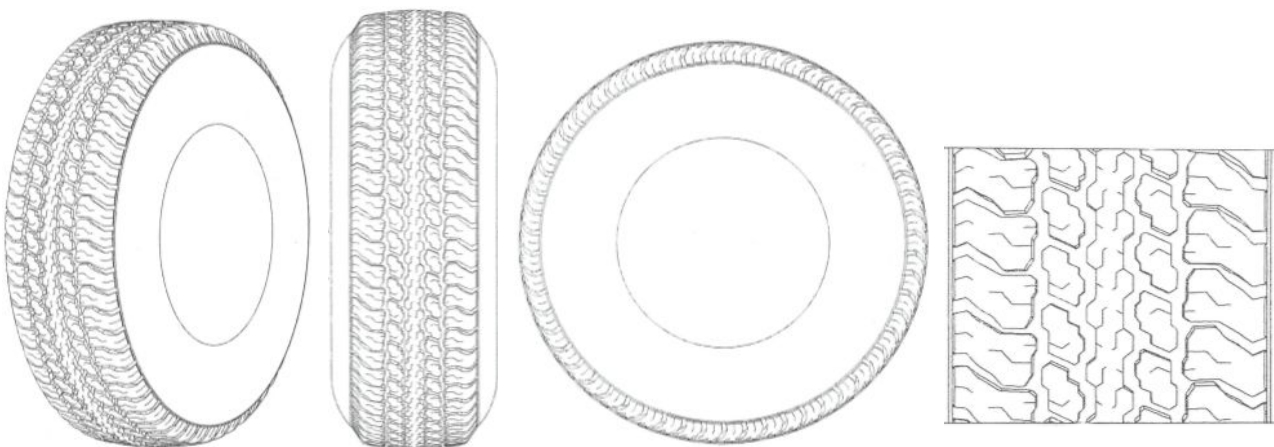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4. 선행디자인 24 (을 제31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228361호/1997. 6. 16./1998.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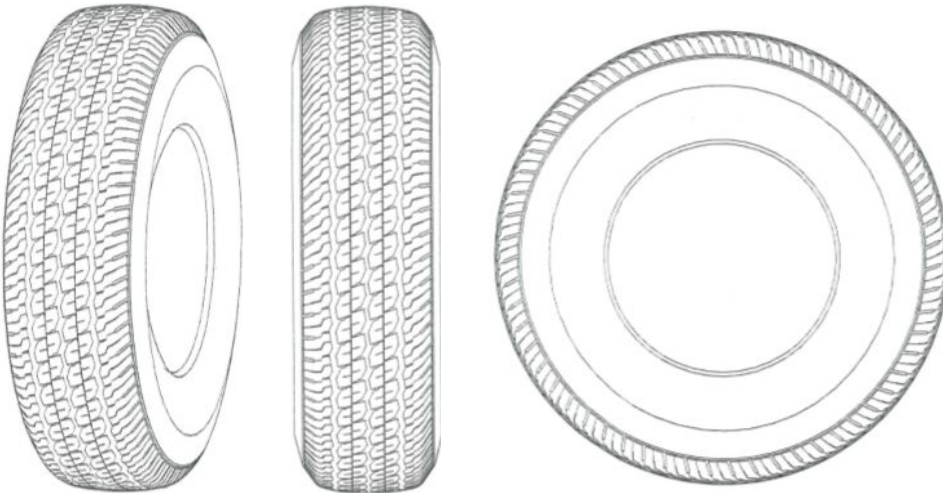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5. 선행디자인 25 (을 제32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222891호/1997. 8. 30./1998.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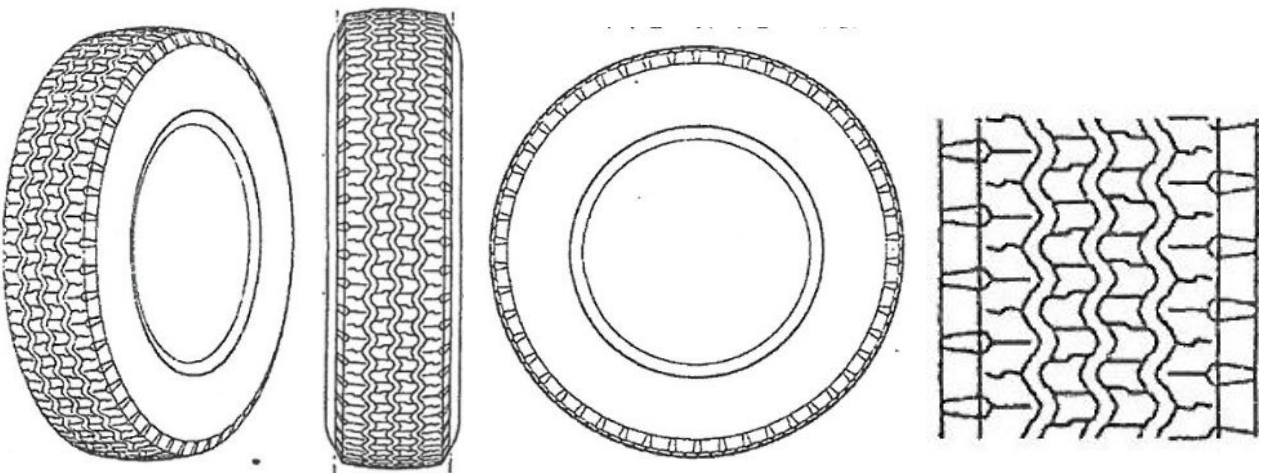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6. 선행디자인 26 (을 제33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168874호/1994. 6. 22./1995. 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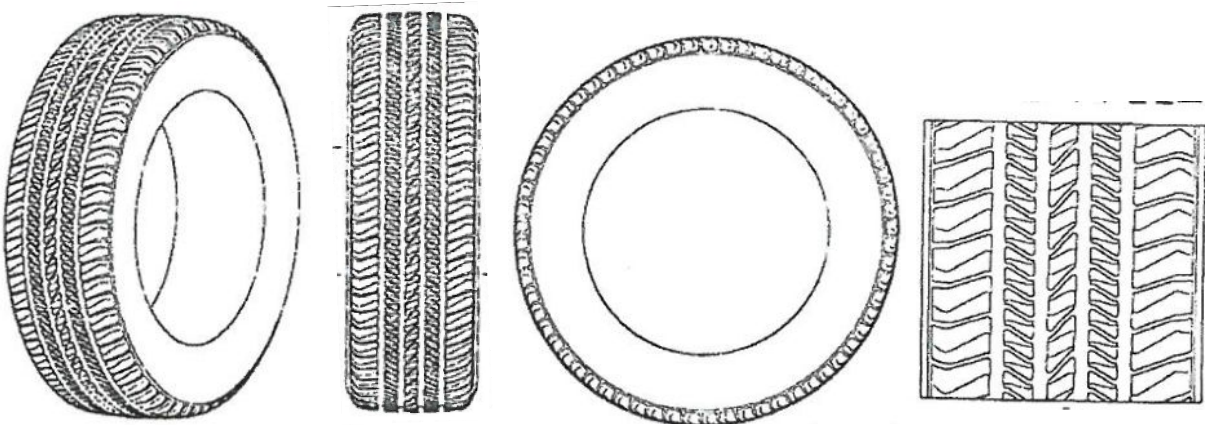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7. 선행디자인 27 (을 제34호증)

○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168705호/1994. 7. 22./1995. 9. 15.

○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 자동차용 타이어



28. 선행디자인 28의 1 (을 제3, 44호증)

○ 출처: 2008~2009 트럭 버스용 타이어 가이드 11쪽 등 게재

○ 물품의 명칭: 한국타이어 AH11

○ 디자인의 주요도면:



29. 선행디자인 28의 2 (을 제46, 47호증)

- 출처: 2009 한국타이어 유럽 카탈로그 98쪽 게재
- 물품의 명칭: 한국타이어 DH05
- 디자인의 주요도면:



30. 선행디자인 28의 3 (을 제4, 46호증)

- 출처: 2008~2009 트럭 버스용 타이어 가이드 13, 28쪽 등에 게재
- 물품의 명칭: 한국타이어 DH15
- 디자인의 주요도면:



31. 선행디자인 29의 1 (을 제3, 47호증)

- 출처: 2008~2009 트럭 버스용 타이어 가이드 10쪽, 2009 한국타이어 유럽 카탈로그 94쪽 게재
- 물품의 명칭: 한국타이어 AH22
- 디자인의 주요도면:



32. 선행디자인 29의 2 (을 제47호증)

- 출처: 2009 한국타이어 유럽 카탈로그 86쪽 게재
- 물품의 명칭: 한국타이어 DL10 e-cube
- 디자인의 주요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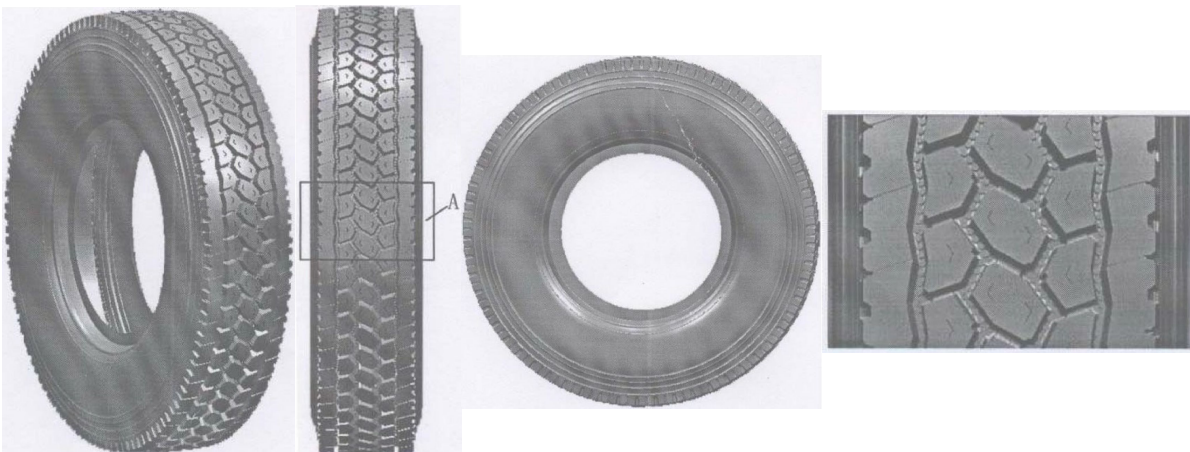
33. 선행디자인 29의 3 (을 제47호증)

- 출처: 2009 한국타이어 유럽 카탈로그 92쪽 게재
- 물품의 명칭: 한국타이어 TL10 e-cube
- 디자인의 주요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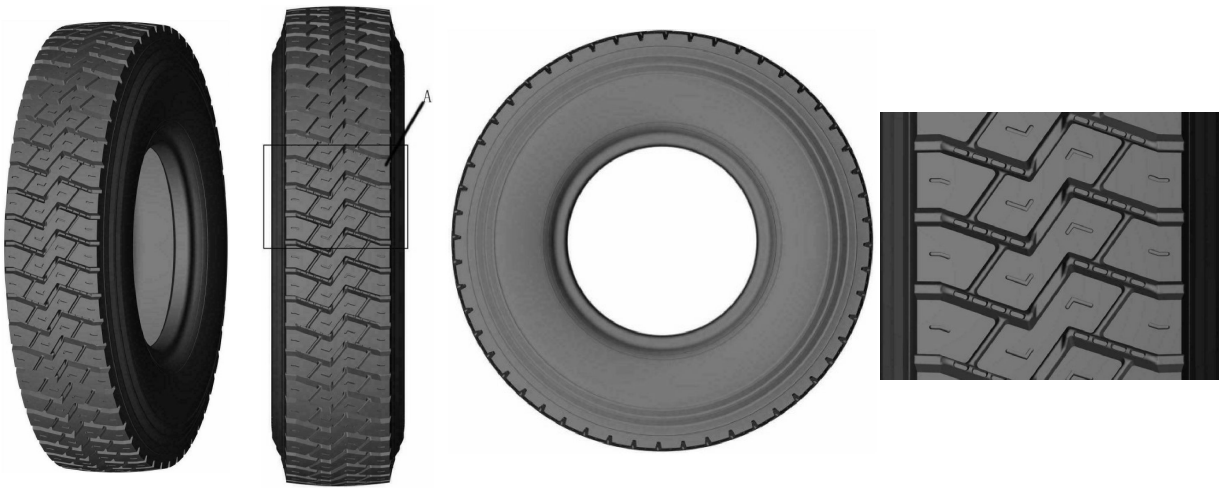
34. 선행디자인 30의 1 (을 제48호증의 1)

- 등록번호/공고일: 중국 디자인등록번호 CN301245470S호/2010. 6. 2.
- 물품의 명칭: 타이어(HN377)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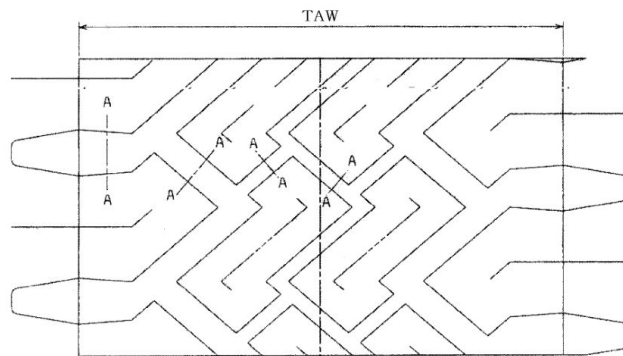
35. 선행디자인 30의 2 (을 제48호증의 2)

- 등록번호/공고일: 중국 디자인등록번호 CN301937540S호/2012. 5. 30.
- 물품의 명칭: 타이어(HN371)
- 도면:



36. 선행디자인 31 (을 제50호증)

- 출원번호/공개일: 특허출원 제10-2002-0001842호/2003. 7. 23.
- 발명의 명칭: 중하중용 공기압 래디얼 타이어
- 도면:



끝.